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운영

최 두 선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I. 머리말

지방재정은 충규모면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의존재원의 비중도 따라서 증가하는 등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는 자주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가 국세에 비하여 탄력성이 크게 떨어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용재원은 총예산규모의 19.4%에 불과한데 비하여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따라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어떻게 투자재원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방재정운용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92년에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동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민선단체장 출범과 함께 관련법규 등이 정비완료된 '95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동심사제도의 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용에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투자심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실무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투·융자심사제도의 의의

1. 투·융자심사제도의 개념

투·융자심사제도운영의 기본취지는 지방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중복성·사업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자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투자심사주체 및 대상사업

투자심사는 크게 자체심사와 의뢰심사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후자는 시·도 또는 행정자치부에 심사를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및 투·융자심사분석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투자심사 주체별 대상사업의 구분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 투자심사 주체별 대상사업 현황>

□ 자체심사(자치단체별)

- 시·군·자치구 : 총사업비가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자체신규사업
- 광역시·도 : 총사업비가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신규사업
- 서울특별시 : 총사업비가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신규사업

□ 의뢰심사(시도·중앙)

- 시·도 심사
 -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와 관련되는 사업
 - 총사업비가 50~200억원미만 시·군·자치구 신규사업
 - 중앙 및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되는 사업

○ 중앙심사

- 2개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사업
- 외국의 차관이 도입되는 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 중앙의 지원을 받아(국고보조, 양여금, 특별교부세 등) 시행하는 사업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사회정책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투자사업의 범위

가. 심사대상사업

투자심사 대상사업중 투자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리고 단순히 세출예산 과목구조상 시설비(401)만 투자사업으로 보아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1년도 투·융자심사분석지침(예규 제37호)에 의하면 “투자심사대상사업은 세출예산경제성절별분류상 투자비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로서 다음연도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계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세출예산구분상 인건비, 기본행정비, 경상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사업비적 성격의 모든 사업은 심사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과목구조상 출연금(306), 공기업자본전출금(404), 출자금(502)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상 투자사업에 해당된다면 심사의 대상사업에 해당된다.

< 표 2 : 투자사업의 범위 >

예산내용의 성격상 인건비, 기본행정비, 경상비를 제외한 모든 투자적 성격의 사업은 투자심사대상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재심사 대상사업

투자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지자체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3년간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미추진중인 사업, 당초 총사업비대비 50%이상 증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총사업비”란 당초심사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

된 사업비를 말한다.

다. 심사제외대상사업

투자심사제외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지침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재해복구 등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법령 또는 국가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표 3> 참조)

<표 3 : 심사제외대상사업 현황>

사 업 명	관 계 법
1.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부)
2.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부)
3.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부)
4. 대구획정리경지재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부)
5.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농림부)
6. 말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농림부)
7.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농림부)
8. 지적제조사 사업	지적제조사법(내무부)
9. 개발촉진지구개발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법(건교부)
10.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건교부)
11.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건교부)
12. 철도건설목 개량사업	건설목개량촉진법(철도청)
13.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건교부)
14. 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하수도법(환경부)
15.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해양수산부)
16. 전액민자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재정부)
17.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건교부)
18.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심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자원부)

○ 중앙심사 제외사업

- 전액 지방비 부담사업(시도비 지원이 있을 시는 시도심사)
 - 단, 2개이상 시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 외국의 차관이 도입되는 사업,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중앙심사대상에 포함

○ 시도심사 제외

- 전액 시·군·구비 부담사업

- 단, 2개이상 시·군·구와 관련이 있는 사업, 지방채 발행대상사업은 심사대상에 포함

4. 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15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하에 두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도 및 시·구심사위원회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을, 군(郡)심사위원회는 2분의 1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Ⅲ. 투·융자심사방법

1. 투자심사 실시의 시점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볼 때 투자심사를 어느시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이에 대해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7호) 제4조에서는 “투자심사는 다음회계연도에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실시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당해사업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해』에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규투자사업의 발주(계약)가 이루어지는 전년도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을 뜻한다.

이에 대한 일부의 혼선을 방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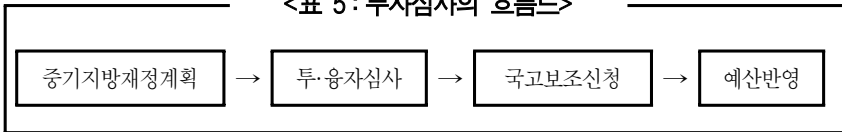
<표 4: 투자심사 실시시점 설명예시>

총사업비 : 500억원(민자 50억원+지자체예산 450억원)			
투자심사 A년도	사업시행 (민간자본 50억 투자) B년도	사업시행 (민간자본+지방비투자) C년도	사업시행 (민간자본+예산편성) D년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자본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50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B년도에는 사업비가 지자체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순수민간자본(50억원)만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얼핏보면 예산편성은 C년도부터 이루어지므로 B년도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다음회계연도인 B년도에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지므로 A년도에 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투·융자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하여 투자심사의 시기는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심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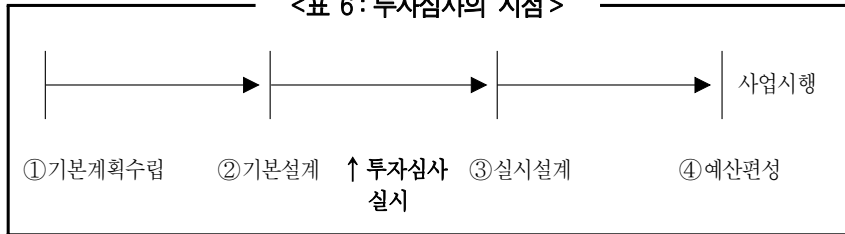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국고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금신청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상반기중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5: 투자심사의 흐름도>

한편, 사업별 심사는 실시설계용역전단계에서 시행하도록 투·융자심사분석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기본설계이후 실시설계이전단계에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시설계이후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가 재검토, 부적정 등으로 판정될 경우 용역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실시설계이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표 6 : 투자심사의 시점>



2. 투자심사기준

투·융자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효율성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한정된 가용재원을 어떠한 기준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사업의 시급성, 재원조달 가능성, 타당성, 미래적 투자가치,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투자사업심사기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리해보면 <표 7>과 같다.

< 표 7 : 투자심사시 고려할 사항 >

- 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가
 - 주민이해관계, 위치선정여부, 법률적으로 인·허가 및 행정절차 가능여부 등
- ② 재원조달계획은 현실성이 있는가
 -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 지원가능(현실성), 자체재원 확보가능성
- ③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인가
 - 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여부 등
- ④ 투자가치를 충분히 분석하여 보았는가
 - 현재·미래의 주민수혜도, 경제적수익성, 활용가치 등
- ⑤ 국가 및 다른지자체와 중복성은 없는가
 - 미래의 관점에서 중복성 여부 검토

투자심사대상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 8>의 심사방법과 같은 비용편익분석(Benefit / cost Analysis) 등 민간기업의 사업타당성 분석방법을 접목시켜 투자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경우에도 한정된 가용재원을 놓고 어떠한 대안의 선택이 시기적으로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는가를 비용편익분석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며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종 공공사업은 경제성·수익성과 함께 공공성, 미래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쉽게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8: 비용 편익분석방법을 접목시킨 투자심사방법>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항목	평 가 점 수				점 수	평 점
			10점	8점	6점	4점		
경제적 효율성		투자 수익율	10%이상	5-10% 미만	2-5% 미만	2%미만		
사업 파급효과		파급효과	매우 큼	큼	보통	적음		
주민 숙원도		민원해결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주민 수해도		수혜범위	70%이상	50-70% 미만	20-50% 미만	20%미만		
사업 요구도		성과지표	0.4 미만	0.4-0.7 미만	0.7-1.0 미만	1.0 이상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확보 가능성	100%	60-100% 미만	30-60% 미만	30%미만		
사업추진 상태		사업추진 준비	발주단계	계획 추진중	계획구상	추후 바람직		

※ 적정(70점이상), 조건부인정(60점이상 70점미만), 재검토 및 유보(60점이하)

여기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가용재원의 판단이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재원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이다.

가용재원을 잘못 판단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여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처럼 심사를 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차후에 재원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사

례가 발생될 경우 오히려 추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약한 재정여건을 더욱 더 어렵게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방법은 회계연도별 세입추계와 세출예산을 미리 산출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해야 한다. (<표 9> 참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고보조금, 양여금, 특별교부세, 시·도지원사업비 등 지원재원중 확보예정금액이 불투명한 재원은 세입과 세출에서 미리 제외하고 산정하여 실제가용재원의 범위 오차를 가능한한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표 9: 가용재원 판단서식>

(단위: 억원)

구 분		'99결산	2000	2001	2002	2000년이후
Ⅰ. 세 입 (Ⅰ)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수입					
	임시적수입					
보 통 교 부 세						
조 정 교 부 금						
재 정 보 전 금						
Ⅱ. 세 출						
경상비	인 건 비					
	경 상 적 경 비					
채 무 상 환	지 방 채 상 환					
	채무부담행위상환					
투 자 재 원	소 규 모 사 업					
	시군구 지원사업 (광역단체에 한함)					
	계 속 사 업					
	투자심사제외사업					
기 타	예 비 비					
	기 타					
Ⅲ. 순수가용재원(Ⅰ - Ⅱ)						

3. 투자심사의 방법 및 절차

가. 기초심사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는 사업부서의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기초 심사를 해야 한다. 기초심사시에 검토할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 기초심사시 검토사항 >

-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정확도
- 사업규모의 적정성, 시행의 타당성
-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시설운영계획 등

사업부서에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기초심사를 완료하여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한 후 투자심사부서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나. 실무심사

투자심사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표 10>과 같이 예산과목체계별, 기능별, 세부분야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분류된 심사안건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올바른 판단과 평가를 위해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심사위원회는 법적기구는 아니라 투자심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투자심사대상사업별로 실무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친 실무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정리한 투·융자사업 심사안건을 만들어야 한다.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회계별 투자가용재원의판단, 단위사업계획분석 및 검토, 사업부문별재원배분계획, 주민수해도 및 이해관계, 수익분석(비용, 편익분석), 법률적·행정적 절차의 타당성 문제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실무자 상호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0:분 류 체 계>

현 예산과목체계		기능별분류	세 부 분 야 별
장	관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	문화·체육·청소년·관광	교육, 문화, 체육, 청소년, 관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청소·환경·상하수도	환경, 수질, 상하수도
	사회보장	사회보장·보건	보건, 복지, 사회보장, 장애인, 아동, 여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지역개발	주택, 지역 및 도시개발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수산개발	농업, 축산, 수산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경제, 통상, 공업단지조성
	국토자원보존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 수자원(치수), 재해, 재난
	교통관리	도로교통	도로, 교통
민방위	민방위관리	민방위·소방	민방위, 소방
	소방관리		

다. 위원회 심사

실무검토가 완성되면 심사안을 최소한 위원회개최 10일전에 배부하여 사전 검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안의 배분은 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배분하되 안전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건당 최소한 2명이상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전에 실무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이 공동으로 현지를 사전 조사하여 위치, 지형, 주민의견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심사과정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안전을 배분하는 경우 도면, 관계법령 등을 사전에 배부하여 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개최시 쟁점이 되는 주요심사안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직접 참가·설명하도록 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투자심사부서에서는 설명대상사업을 사전에 선정하여 심사위원 및 관련부서 등에 통보해야 할 것이다.

라. 심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투자심사결과는 ①적정 ②조건부인정 ③재검토 ④부적정의 4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그 의미는 아래표와 같다.

- 적 정 :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 조건부인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건이행이 완료되면 사업추진
※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불가
- 재검토 :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차기심사에 재상정
- 부적정 :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예산반영 불가

투자심사부서에서는 투자심사결과를 해당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부서에 상반기 심사는 4. 30까지, 하반기심사는 9. 30까지 각각 통보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있어서는 1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채발행의 승인, 특별교부세의 교부, 지방양여금의 지원,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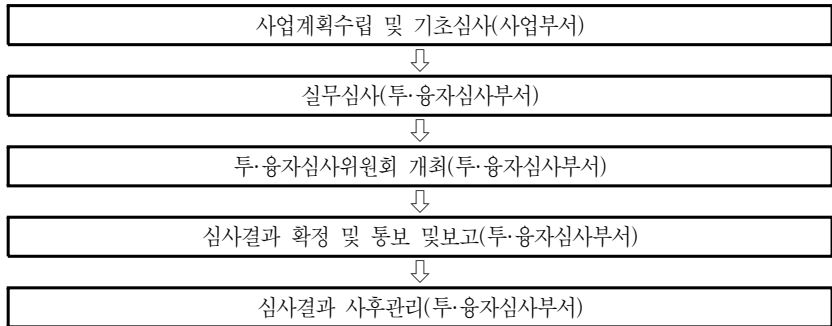
마. 투자심사결과의 사후관리

확정된 심사결과는 각 사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는 투자심사 결과를 사업유형별로 재원투자계획,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의 변경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차기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당해 지자체의 투자재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의 시행체계를 도표로 그려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 투·융자사업 시행체계>



IV. 투자심사제도의 발전방향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이다.

동 제도가 예산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오히려 업무만 가중되고 불필요한 인력낭비만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동 제도는 사업예산편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투·융자심사제도는 그동안 제도상의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 개선하여 왔으나, 운영 측면에 있어 미흡한 부문에 대한 발전방향을 몇가지 제시하여 보겠다.

1. 국고보조금 지원과 연계 강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8조에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는 국고보조금, 교부세, 지방양여금 지원과 상호 연계가 되도록 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의 경우 각 중앙부처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된 (안)을 국회에 제출·의결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때때로 관계부처 입장에서만 판단하여 투자심사결과와 무관하게 국고보조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지방재정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무

리한 사업추진으로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신청만료기한인 5. 31이전인 상반기 심사중(4. 30까지) 완료토록 하여 투자심사결과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투자심사결과 이행확보방안 강구

현행 투자심사제도는 심사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예산의 지원 등을 중단하는 방법의 제재수단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투자심사 미이행 또는 미반영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투자심사위원회의 활성화 대책 마련

현재 관계전문가들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면밀한 자료검토,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칠 수 있도록 투자심사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가용재원의 산출모델 마련

투자심사는 향후 가용재원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3~5년동안의 순수가용재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산출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투자심사결과와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화

투자심사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현황을 체계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결과를 사업분야별로 카드 전산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추진변동상황, 자원변동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유지·관리함으로써 자치단체내의 투자사업 진행 및 향후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만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 는 말

이상에서 투자심사의 개념, 절차, 심사기준 등을 실무차원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투·융자심사제도는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내실있게 운영하면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전재정운영에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빈틈없는 치밀한 자료의 준비 및 현장실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가 필요하며, 이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지방자치의 앞날은 더욱 더 밝아질 것이다. ☺

시사용어 해설

• 굵은 모, 무른 모, 다람쥐

문화체육부가 제정·발표한 컴퓨터용어 표준안으로써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굵은 모”라 하고 소프트웨어를 “무른 모”라 하며 마우스를 “다람쥐”라고 함.

- 편 집 실 -